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49
------	-----

2009. 2.
제 정 경 제 위 원 회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9년 1월 30일
- 나.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다. 회부일자 : 2009년 1월 30일
- 라.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 (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 행정능력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령)

가. 조례의 개요

-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 등 5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무’의 위임 대상사무를 현행 1천대 미만의 업체에서 5천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의 위임 신설

[별표 중 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제10호 신설]

-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허가, 변경 및 변경신고, 휴·폐업, 재개업신고, 지위승계 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응급환자 이송업”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¹⁾으로, 서울시에는 2009년 현재 ‘한국응급환자이송단’ 등 6개 업체에서 188대의 구급차가 운영 중에 있음.
- 정부는 동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양 사무로 판단해 제17대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2007.11.6)한 바 있으나, 임기만으로 자동 폐기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음.
- 자치구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17개 자치구에서 동의(68%)²⁾하여 수입희당사무로 볼 수 있으며, 연간 변경허가 및 신고처리 업무가 20건 미만³⁾에 불과해 자치구에 업무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원인의 접근성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무의 위임으로 법리적으로 관할 영업지역을 자치구 단위로 제한하여 허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호

2)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6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찬성하였음.

3) 최근 3년간 응급환자 이송업과 관련된 변경허가, 변경신고, 재개업 신고를 살펴보면, 2006년 12건, 2007년 19건, 2008년 13건이었음.

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자치구간 행정질차상의 문제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게 됨. 따라서 업무 위임시 서울전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무의 위임 신설

[별표 중 맑은환경본부(환경행정담당관) 제2호 개정]

-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으로 분류⁴⁾되며, 이중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에 관한 업무는 지난 2005년 9월 30일자로 자치구에 위임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처리업 중 미위임된 ‘중간처리업’에 대한 허가, 신고, 승인, 과징금 처분 등의 관리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그 밖에 시 업무로 존치돼 왔던 건설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청문의 실시, 과태료 부과·징수를 자치구로 함께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강서구 소재 2개 업체⁵⁾만이 영업 중에 있으며, ‘중간처리업’에 대한 사무는 대부분 해당 자치구 검토의견에 의해 허가 처리되고 있고, 처리실적 또한 자치구에서 수합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동 위임사무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15개 자치구가 동의하였고(60%), 타 시·도 사례에서도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사무처리 실태와 자치구의 의견, 타 시도의 위임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할 자치구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 정기간행물 중 잡지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 신설

[별표 중 문화국(문화예술과) 제3호 신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8. 6. 5)으로 시장에게 등록하던 ‘잡지의 간행물’의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유사 사무인 ‘잡지’의 등록 및 관리 사무를 자치구에 함께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정 이전에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문(일반일간신문 제외)과 잡지, 기타 간행물 등의 정기간행물은 모두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법 신설됨에 따라 2008. 12. 6일부터 ‘잡지’는 ‘시장’에게, ‘잡지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하도록 이원화되었음.

4)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하며,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상 호	영업대상	소재지	사업장규모	허용보관량	보관실면적
(주)대일환경	폐콘크리트, 페아스콘, 폐벽돌 등 7종	외발산동 391-1	3,659(m ²)	18,000(톤)	1,985(m ²)
서울NET(주)	폐콘크리트, 페아스콘, 폐벽돌 등 8종	개화동 319-7	16,157(m ²)	건설폐재류 48,000(톤)	4,500(m ²)

- 이로 인해 ‘잡지’와 ‘잡지의 정기간행물’의 구분⁶⁾이 어려워 시민들이 해당 등록 및 신고관청을 잘못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정기간행물 사무를 자치구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과 같이 ‘잡지의 간행물’을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기간행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그러나 2,352개 잡지사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의 이관으로 자치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종로구,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잡사가 밀집된 6개 구(전체의 68%)에 대해서는 ‘잡지’ 업무위임에 따른 별도의 관리 인력 보강 및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 중 위임사무의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된 부분과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청문의 실시”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1> 잡지에 관한 위임사무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신설)			수정 의견				
주관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문화국 (문화 예술과)	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나. (생략) 다. 등록 및 신고내용 보고 라. 사. (생략) 아. 직권취소등록 자. 등록·신고 취소심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 <u><신설></u> 찬.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관리	(생략) ○ 같은법 제6조 (생략) ○ 같은법 제5조 (생략) <u><신설></u> ○ 같은법 제3조	구청장 문화국 (문화 예술과)	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 (개정안과 같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사. (개정안과 같음) 아. 직권취소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차. 청문의 실시 칸.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같은법 제7조 (개정안과 같음)	구청장	

6) 정기간행물의 종류(「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구분	정의	
잡지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잡지의 외	정보간행물	보도· 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간행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기타간행물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7) 동 사무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수렴결과 24개 자치구에서 동의한 바 있음.

다. 사방(砂防)사업에 관한 사무의 위임 신설

[별표 중 푸른도시국(자연생태과) 제4호 신설]

- 사방사업법령에 따라 사방사업의 지정 등의 업무는 시장의 권한인 반면, 사방지안에 서의 행위제한 업무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사방사업 전반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들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방사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 집행업무에 속 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자치구에서 수입 희망하는 사무(25개 자치구 100% 동의)이므로 사방사업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동 위임의 타당성이 충분함.
- 다만, 위임 사무에서 일부 누락된 “타당성 평가”와 근거법령 기술에 있어 다른 조문 과 통일성을 기해야 할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2> 사방사업에 관한 위임사무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신설)				수정의견			
주관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푸른 도시국 (자연 생태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푸른 도시국 (자연 생태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방사업의 시행 (산림청 소관 제외)	○ 「사방사업법」 제30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			가. 사방사업의 시행 (산림청 소관 제외)	○ 「사방사업법」 제30조	
	<신설>	<신설>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 같은법 제7조의2	
	<신설>	<신설>			다.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같은법 제7조의2	
	나. 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	○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	○ 같은법 제10조	
	다. 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	○ 같은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마. 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	○ 같은법 제10조 제1항	
	라. 수익의 교부 등	○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바. 수익의 교부 등	○ 같은법 제7조	
	마. 원인자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사. 원인자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9조	
바. 사방사업의 공부 비치	○ 같은법 시행령 제30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아. 사방사업의 공부 비치 및 열람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바. 야생동물의 전문구조 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 신설

[별표 중 푸른도시국(자연생태과) 제5호 신설]

- 조난이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야생 동물전문 구조·치료기관 지정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현재 야생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동물병원 등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반해⁸⁾, 야생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등의 관리는 서울시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하는 시민과 보다 가까이 있는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구조·치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⁹⁾

사. 자동차대여사업 사무의 기준 조정

[별표 중 도시교통본부(운수물류담당관) 제17호 개정]

- 동 위임사무는 자동차대여사업(렌탈업) 업무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관할 기준대수를 기존의 1천대에서 5천대로 개정하여 자치구에서 5천대 미만 업체에 대한 민원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내용임.
- 그동안 자동차대여사업 업무는 대여사업차량 보유대수 1천대를 기준으로 그 미만은 자치구에서, 그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할하여 업무를 처리해 왔음¹⁰⁾.
- 서울시는 이번 기준차량 대수 조정으로 직접 관리하는 업체가 5개 로 감소됨으로써 시에 편중된 단순 반복적인 민원업무의 과중에서 벗어나 고유 정책업무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향후 영업 활성화로 보유 차량대수 1천 대 이상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사무소가 소재한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불합리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할구분 기준대수인 1천대는 특정한 이유나 법률상의 근거 없이 단순히 확정된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5천대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자동차대여사업 업무의 특성상 보유차량대수에 관계없이 업체간 업무가 비슷하여 서울시나 자치구의 업무처리 방식에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서울시가 5천대 이상의 대여차량을 보유한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권한을 계속해서 보유하고자 하는 설명도 부족함.
- 따라서, 동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관할 기준대수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후에 자치구에 전면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대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¹¹⁾.
- 한편, 자동차대여사업 위임사무이면서 근거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사목(법인의 합병인가)부터 하목(보고·서류 제출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까지를 수정해야 하며,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8)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9)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16개 자치구가 동의하여 수임을 희망하는 사무임.
 10) 2008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대여사업용업체는 12개 업체에 113,447대이고,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업체는 198개 업체에 34,868대 임【참고자료 3·4】.
 11)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위임 기준을 현행 1천대에서 5천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12개 자치구가 찬성하고, 13개 자치구는 반대의사를 밝힘.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사무위임조례 별표의 입법기술체계에 있어 위임사무명과 근거 법령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답변 : 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향후 개정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음.

V. 토론요지

- 위원회 질의·답변 과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부분과 다소 부정확하게 기술된 부분, 그리고 입법체계상 통일성이 부족한 일부 조문은 수정되어야 함.

VI.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자치구에 위임되는 사무 중 위임사무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다소 부정확하게 기술된 부분과 입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해야 하는 부분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 내용

- (1) 정기간행물 잠지등록 및 관리에 관한 위임 사무 중 “청문의 실시”를 추가하고, 일부 불명확한 위임사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함(안 별표 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란 제3호).
- (2) 사방사업에 관한 위임 사무 중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과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근거 법령 기술에 통일을 기함(안 별표 푸른도시국 소관 자연생태과란 제4호).
- (3)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위임 사무 중 근거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사목”의 “법인의 합병인가”부터 “하목”의 “보고·서류 제출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까지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입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별표 도시교통본부 소관 운수물류담당관란 제17호).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